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099-01

농업법인 관련 업무안내서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업법인 관련

업무안내서

목 차



첫 번째 마당. 농업법인 설립의 첫걸음

1. 농업법인 제도의 특징	7
2.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13
3.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14



두 번째 마당. 농업법인 설립하기

1. 회사의 구성원과 형태를 정하는 발기	51
2. 조직의 활동규칙을 나타내는 정관의 작성	53
3. 설립 신고에 필요한 사전 준비	55
4. 정관 승인과 임원 선임을 위한 창립 총회	55
5. 대표이사과 임원진 선임을 통한 이사회 구성	56
6. 사업 실행을 위한 자본금 출자	57
7. 법적 절차에 따른 설립등기	58
8. 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법인설립 신고	59
9. 설립사실 관할 지자체 통보	59
10. 사업 시작의 첫걸음! 사업자 등록증 발급	59
11.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60



농업법인 관련

업무안내서

목 차



세 번째 마당. 농업법인 운영에 필요한 회계 · 인사 · 법무 정보

1. 법인 경영의 핵심! 회계	83
2. 법인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사 · 노무	102
3. 법인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법무 정보	119
4. 법인 설립과 운영 시에 고려해야 할 점	127



별첨. 농업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알아야 할 기타 주요 정보

1. 법인 형태별 정관 예시	131
2. 주요 서식 및 작성 Tip	185
3. 온라인 농가경영장부 사용법	233
4. 주요 법령	283



본 안내서는 평소 잦은 질의내용과 주요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업무의 편의 제공과 이해를 돕고자 알기 쉽게 개략적으로 정리한 자료이오니, 동 법인 제도 및 주요 세제지원 등을 실제 적용(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유권해석 기관 등 관계기관의 재확인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Tel. 044-201-1537, 044-201-1534



첫 번째 마당

농업법인 설립의 첫걸음

1. 농업법인 제도의 특징	7
2.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13
3.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14

1. 농업법인 제도의 특징



- ✓ 농업 법인을 설립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거 법령, 법의 성격, 설립을 하는 구성원에 대한 요건입니다.

가. 근거법령

-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 성격

- 동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비 농업인의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10를 초과할 수 없음.
- ※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 한도로 함

다. 설립 주체

-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를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으로 하되 상법상 발기인 규정에 의합니다. (합명·합자회사 2인 이상, 유한·주식회사 1인 이상)



TIP 농업인 정의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동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 받거나 임대 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34호)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참고



TIP 생산자단체 정의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5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조금 조성·운영 단체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라. 사업 범위

-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등

*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TIP 농업의 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조(농업의 범위)

1. 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



TIP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사원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제2조3호)

■ 마. 의결권

- 영농조합법인은 1인1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합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은 민법상의 조합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입니다.
 - * 다만,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두어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합니다.



TIP

농어업경영체법 개정('15.7.7 시행) 주요내용

구분	종전	변경
[1]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 농산물 가공·유통·수출, 농작업 대행, 그밖에 목적달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 농산물 가공·유통, 농작업 대행 및 부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2]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한연대책임 - 조합원은 법인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을 초과하여 개인자산으로 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액한도에서 유한책임 -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
[3]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 유한 또는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조직변경도 가능
[4] 영농조합법인 간 합병·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의 합병·분할 근거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간 합병·분할 근거 및 절차 신설
[5] 농업법인 관리체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장이 실태조사, 해산명령 청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등기 후 설립사실을 지자체장에게 통지 ■ 실태조사 후 시정명령 가능 ■ 해산명령 청구요건 보완 ■ 과태료 부과 신설

2.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 농업법인은 크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어떤 법인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구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명, 합자)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설립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가능 * 결원 시, 1년 이내에 총원 (미충원 시 해산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 * 다만,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동법 시행령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동법 시행령 제19조)
농지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 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일 것) * 농지법 제2조 제3호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법인 수 : 11,599개 법인당 평균 매출액 : 1,058백만원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2,050개 법인당 평균 출자액 : 216백만원 * 출처 : 2014 기준 농어업법인조사보고서 (통계청, 201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법인 수 : 4,883개 법인당 평균 매출액 : 2,545백만원 매출액 10억이상 법인 수 : 1,688개 법인당 평균 출자액 : 426백만원 * 출처 : 2014 기준 농어업법인조사보고서 (통계청, 2015.11)

3.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구분		세제지원 내용
국세	법인세 (2018.12.31까지) ※ 조특법 § 66, 68, 영 § 63~65	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면제 ②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 감면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당 수입금액 6억 이하의 소득분 - 농업회사법인: 연간 수입금액 50억 이하의 소득분 ③ 작물재배업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 : 감면 - 영농조합법인: 출자 조합원 당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 농업회사법인: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 * 축산업, 임업,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부가가치세 ※ 조특법 § 105, § 106	①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②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③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④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취득세 ※ 지특법 § 11, 보칙 제177조의2	①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85% 감면) (2017.12.31까지) ②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2016.12.31까지)
	등록면허세 ※ 지특법 § 11	■ 법인설립 등기 시 면제(2017.12.31까지)
지방세	재산세 ※ 지특법 § 11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50% 감면 (2016.12.31까지)
	양도소득세 (2018.12.31까지) ※ 조특법 § 66, 6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
조합원	배당소득세 (2018.12.31까지) ※ 조특법 § 66, 68	①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전액 소득세 면제 ②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작물재배업 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감면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당 연간 1,200만원에 대해서는 면제, 초과하는 금액은 5% 저율분리과세(종합소득세 비합산) - 농업회사법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가. 소득에 대한 감면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식량작물재배업 소득과 그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면제(조특법 제66조제1항 및 시행령 제63조제1항 1호) ■ 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 × { 6억 × 조합원 수 × (사업연도월수/12) / 곡물 및 기타 식량 재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이하의 금액(조특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2호)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각 사업연도별로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이하의 금액(조특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3호)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으로 쌀,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 원예, 화훼, 특용, 과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면제(조특법 제68조제1항) ■ 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50억 × (사업연도월수/12) /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이하의 금액(조특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부터 4년 간 법인세 50% 감면(조특법 제68조제1항, 조특법 제6조제1항)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 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으로 축산업, 임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 1항의 농업회사 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농산물유통, 가공, 판매 및 농작업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임

■ 상기 법령으로 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과세 대상임

* 기타소득이라 함은 농업법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임대소득 등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이 되지 않음(일반 과세 대상)

나.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양도소득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령이 정한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및 초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면제 단, 출자한 농업인이 출자지분을 3년내 양도시 세액을 추징함.(조특법 제66조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조특법 제68조제2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는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받음.(조특법 제66조제7항) 단,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3년 이내 처분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조특법 제66조제9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조특법 제68조제3항) * 이월과세는 개인이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산출세액을 법인 세로 납부하는 제도
배당소득세 면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 소득세 면제(조특법 제66조2항)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의 경우 12백만원 이하의 금액 소득세 면제, 12백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5% 저율분리과세 *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무의무가 종결되는 제도 (조특법 제66조제2항~3항, 조특법 시행령 제63조제2항~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조특법 제68조4항)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기타소득 제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조특법 제68조4항 및 시행령 제65조2항) * 기타소득(법인세 면제 항목 참조)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함.

- 상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법제66조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로 한정)
- 법 제66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 단, 동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각호의 농지는 제외

다. 부가가치세 면제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부가가치세면제 (조특법 제106조 제 1항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대행, 선별, 포장용역은 면제되나 운반, 저온저장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규정 : 조특법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5.7.29, 대통령령 제26438호) •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특법 제105조의2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농업법인이 직접 작물재배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따라서 공동구매, 도·소매업의 경우 농업인이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5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사료법에 의한 사료, 임업용기자재, 친환경 농업용기자재 등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규정 : 조특법 제105조제1항제5호, 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5.7.29, 대통령령 제2643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p>취득세 면제 및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및제2항, 보칙 제177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85% 감면) * '11.1.1일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시행됨 ■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 영어자금, 영림자금, 축산자금을 용자 하는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동법 제19조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 사육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마. 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구 분	농업법인 지원대상
<p>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류 지원 (조특법 제106조의 2제1항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임업·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등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 조특법 제106조의 2제1항제1호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근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6438호, '15.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법인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지원 대상 시설 및 기계류(p.25~28 참조)/(근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82호, '15.3.13))

[별표 1] < 개정 2014.2.21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관련)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6. 스피드스프레이
7. 삭제 <2008.2.22>
8. 콤팩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2006.2.9>
11. 삭제 <2010.2.18>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앞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제 <2006.2.9>
21. 삭제 <2006.2.9>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삭제 <2006.2.9>
25. 동력시비기
26. 삭제 <2008.2.22>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삭제 <2008.2.22>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제 <2006.2.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제 <2006.2.9>
40. 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42. 버섯재배소독기
43. 삭제 <2006.2.9>
44.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45. 삭제 <2006.2.9>
46. 삭제 <2006.2.9>
47. 삭제 <2008.2.22>
48. 삭제 <2006.2.9>

[별표 2] < 개정 2008.2.22 >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관련)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4. 사제 <2008.2.22>
5. 사제 <2008.2.22>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사제 <2008.2.22>
12. 사제 <2008.2.22>
13. 이표기
14. 사제 <2008.2.22>
15. 사제 <2008.2.22>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사제 <2008.2.22>
20. 집란기
21. 계란선별기
22. 사제 <2008.2.22>
23. 사제 <2008.2.22>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사제 <2008.2.22>
28. 사제 <2008.2.22>
29. 원유냉각기
30. 사제 <2008.2.22>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사제 <2008.2.22>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사제 <2008.2.22>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51. 벌통
52. 채밀기(採蜜器)
53. 소초(巢礎)세트
[소초광(巢礎筐)·사양기(飼養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별표 3] < 개정 2013.12.15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5항관련)

- | | |
|-----------------------------|-----------------------|
| 1. 임업용 동력천공기 | 7.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
| 2. 임업용 약제주입기 | 8.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
| 3.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를 포함한다) | 9. 타워야더(Tower yarder) |
| 4.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를 포함한다) | 10. 포워드(Forwarder) |
| 5. 임업용 원치 | 11. 목재파쇄기 |
| 6.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 12. 톱밥제조기 |
| | 13. 동력임내차 |
| | 14. 밤수집기 |
| | 15. 자동지타기 |

[별표 3의2] < 신설 2005.2.19 >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6항관련)

1. 키토산(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2. 목초액(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3. 천적(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별표 5] < 개정 2015.2.3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관련)

1. 농업·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꽃이에 한정한다)
2.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야생화·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임업용 부직포(작물·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임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수실류·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임업용 양수기
14. 범씨밭아기
15. 동력배토기
16. 동력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별표 5] < 개정 2015.2.3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관련)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약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 농업·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과망·마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별표 가] < 개정 2014.3.14 >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시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1항관련)

1. 김, 가시파래 건조시설
2. 멸치 자숙(煮熟)·건조시설
3. 미역, 다시마 및 톳 자숙·건조시설
4. 오징어 건조시설
5. 새우 자숙·건조시설
6. 패류 자숙시설
7. 「수산업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어업용 시설
8. 「수산업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육상해수 양식어업용 시설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용 시설
9. 양식어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10. 해삼 자숙·건조시설

[별표 나] < 개정 2014.3.14 >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제7조제2항관련)

1. 동력경운기
2. 농업용 트랙터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액체형태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고속분무기
(스피드스프레이)
6. 바인더
7. 콤바인
8. 곡물건조기
9. 주행형 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 건조기
14. 관리기
15. 삭제 <2008.4.24>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되며,
이 난방기에는 경우 면세유
공급은 제외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삭제 <2008.4.24>
24. 동력배토기

[별표 나] < 개정 2014.3.14 >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제7조제2항관련)

- | | |
|--------------------|---|
| 25. 동력시비기 | 39. 잔디깎는 기계(농업용으로서 25마력 이하인 것에 한한다) |
| 26. 삭제 <2008.4.24> | 40. 녹차채엽기 |
|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 41. 벼섯재배소독기 |
| 28. 농산물 결속기 | 42.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
|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 43. 농업용 로더(4톤 미만) |
| 30. 농산물 세척기 | 44. 농업용 동력제초기 |
| 31. 삭제 <2008.4.24> | 45. 농업용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
| 32. 동력혈굴기 | 46.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
| 33. 동력구절기 | 47. 화식(火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
|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 |
|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 |
| 36. 동력파종기 | |
| 37. 삭제 <2008.4.24> | |
| 38. 농선 | |

[별표 다] < 개정 2011.3.21 >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2항관련)

1. 임업용 동력기계톱
2. 임업용 동력천공기
3. 임업용 원치
4. 임업용 동력집재기
5. 목재파쇄기
6. 톱밥제조기
7. 자동지타기
8. 동력상하차기
9. 동력임내차
10. 타워야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시행 15.12.31, 훈령 제200호) [별표10 : 제91조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2. 사업별 지원요건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나.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라.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60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를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2016년도에 시행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 목록



✓ 아래의 내용은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시행지침서에 수록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을 나열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 목록
1	농지규모화사업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3	농지매입·비축사업
4	중자산업기반구축사업
5	해외농업개발(유자)사업
6	농기계임대사업
7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8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9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10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11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12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13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14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15	산지유통활성화사업

No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 목록
16	농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
17	농산물자조금지원
18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19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20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21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22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23	원예시설현대화사업
24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25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6	첨단온실사업
27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28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29	산림소득증대사업
30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31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32	임산물수출사업
33	조림·숲가꾸기사업
34	유기질비료지원사업
35	토양개량제지원사업

No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 목록
36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37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38	신기술보급사업
39	농업경영컨설팅사업
40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4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4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지자체)
43	경영이양직접지불제
4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4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46	밭농업직접지불제
47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48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49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50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51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52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53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용자)사업
54	취약농가인력지원
55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No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 목록
56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지원
57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58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59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60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61	말산업육성지원
62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63	송아지생산안정
6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65	축산경영종합자금
66	축산자조금지원사업
67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68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6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7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사 례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은 가능합니다. 법 규정에 따라 총회소집 공고, 총 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의결, 채권자 보호절차 등을 거친 후 요건을 갖추어 정관 등을 변경하고 등기소에서 변경등기 하시면 됩니다.

 함께 생각해 보세요!

사 례



상법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전환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변



상법상 일반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명칭변경, 설립목적, 사업범위, 비농업인 출자한도
등)을 갖추어 정관변경, 총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항을 변경등기하시면 됩니다.

사 례



농업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나요?

답 변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농업인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표자도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가 가능하며 대표자 역임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농업인의 출자한도(총 출자액의 90% 이내) 를 넘지 않아야 하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자(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세요!

사 례



현재 영농조합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또 조합원
으로 가입해도 되나요?

답 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 소속된 영농조합법인과 새로 가입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문제가 없고,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출자를 하여 법인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례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검토 중인데 농업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하여 제가 궁금한 점은...

1. 농업인 자격이 없는 자가 농업회사법인의 업무 집행권자(상법상 등기이사_상근)로 1년간 농업회사법인에 근무한 경우 농업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지 여부
2. 농업인 자격이 없는 자가 농업회사법인의 업무 집행권자(상법상 등기이사_비상근)로 1년간 농업회사법인에 근무한 경우 농업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지 여부
3. 농업인 자격이 없는 자가 농업회사법인의 집행 임원(상근)으로 1년간 농업회사법인에 근무한 경우 농업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지 여부
4. 농업인 자격이 없는 자가 농업회사법인의 집행 임원(비상근)으로 1년간 농업회사 법인에 근무한 경우 농업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지 여부

 함께 생각해 보세요!

답 변



상기 1호 내지 4호의 사례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농업인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비농업인 중 농업회사법인에 출자 하고 동 법인의 업무집행권자 내지 임원(상근 또는 비상근)이 된 경우에는 출자자(주주)로서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참여 하는 행위로써, 농업인의 자격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인의 기준 중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은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 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출자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답 변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농업인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지분을 양수받을 양수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정관례(농식품부 고시 2015-141호)에 따르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25조)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농조합법인이 민법상 조합에 준하여 조합원간 협의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에서 지분의 양·수도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만약 규정한 바가 없다면, 총회를 통해 동 사안을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사 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정관을 정하는데 있어서 "1조합원 1의결권"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율에 따른 의결권"으로 정관에 정했다면 이 정관이 영농조합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규에 위배되나요?

답 변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 의사결정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총 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관으로 그 내용을 정한 경우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 례



발기인이 농업인의 명의를 빌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적법한지와 임원과 조합원의 수에는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 시 출자 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기인들이 실제 농업인이 아니면서 다른 농업인의 명의를 빌렸다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임원과 조합원의 수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농업법인 설립·운영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리스트

■ 농업 법인 관련

구분	홈페이지	대표전화	비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www.naqs.go.kr	054-429-4000	■ 농업인 확인서 발급, 설립 후 농업 경영체 등록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www.kaff.or.kr	02-3401-6543	
농업인교류센터	www.kafcc.net	070-7165-0013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운영 - 법률, 세무 자문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www.foodbiz.or.kr	1566-2272	■ 기술, 경영, 수출 등 컨설팅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www.korlca.or.kr	031-292-4911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www.aceo.or.kr	02-6300-8378	■ 법인관련 사업, 교육운영, 제도개선, 민원, 가입안내 등

■ 지방법원 등기소 : 법인 등기 업무

구분	홈페이지	대표전화	비고
서울지방법원등기소	www.seoul.scourt.go.kr	02-530-1114	■ 법인 등기업무
서울동부지방법원등기소	www.sldongbu.scourt.go.kr	02-2204-2114	■ 법인 등기업무
서울남부지방법원등기소	www.slnambu.scourt.go.kr	02-2192-1114	■ 법인 등기업무
서울북부지방법원등기소	www.slbukbu.scourt.go.kr	02-910-3114	■ 법인 등기업무
서울서부지방법원등기소	www.slseobu.scourt.go.kr	02-3271-1114	■ 법인 등기업무
의정부지방법원등기소	www.uijeongbu.scourt.go.kr	031-828-0114	■ 법인 등기업무
인천지방법원등기소	www.incheon.scourt.go.kr	032-860-1113~4	■ 법인 등기업무
수원지방법원등기소	www.suwon.scourt.go.kr	031-210-1114	■ 법인 등기업무
춘천지방법원등기소	www.chuncheon.scourt.go.kr	033-259-9000	■ 법인 등기업무
대전지방법원등기소	www.daejeon.scourt.go.kr	042-470-1114	■ 법인 등기업무
청주지방법원등기소	www.cheongju.scourt.go.kr	043-249-7114~5	■ 법인 등기업무
대구지방법원등기소	www.daegu.scourt.go.kr	053-757-6600	■ 법인 등기업무
부산지방법원등기소	www.busan.scourt.go.kr	051-590-1114	■ 법인 등기업무
울산지방법원등기소	www.ulsan.scourt.go.kr	052-216-8000	■ 법인 등기업무
창원지방법원등기소	www.changwon.scourt.go.kr	055-266-2200	■ 법인 등기업무
광주지방법원등기소	www.gwangju.scourt.go.kr	062-239-1114	■ 법인 등기업무
전주지방법원등기소	www.jeonju.scourt.go.kr	063-259-5400	■ 법인 등기업무
제주지방법원등기소	www.jeju.scourt.go.kr	064-729-2000	■ 법인 등기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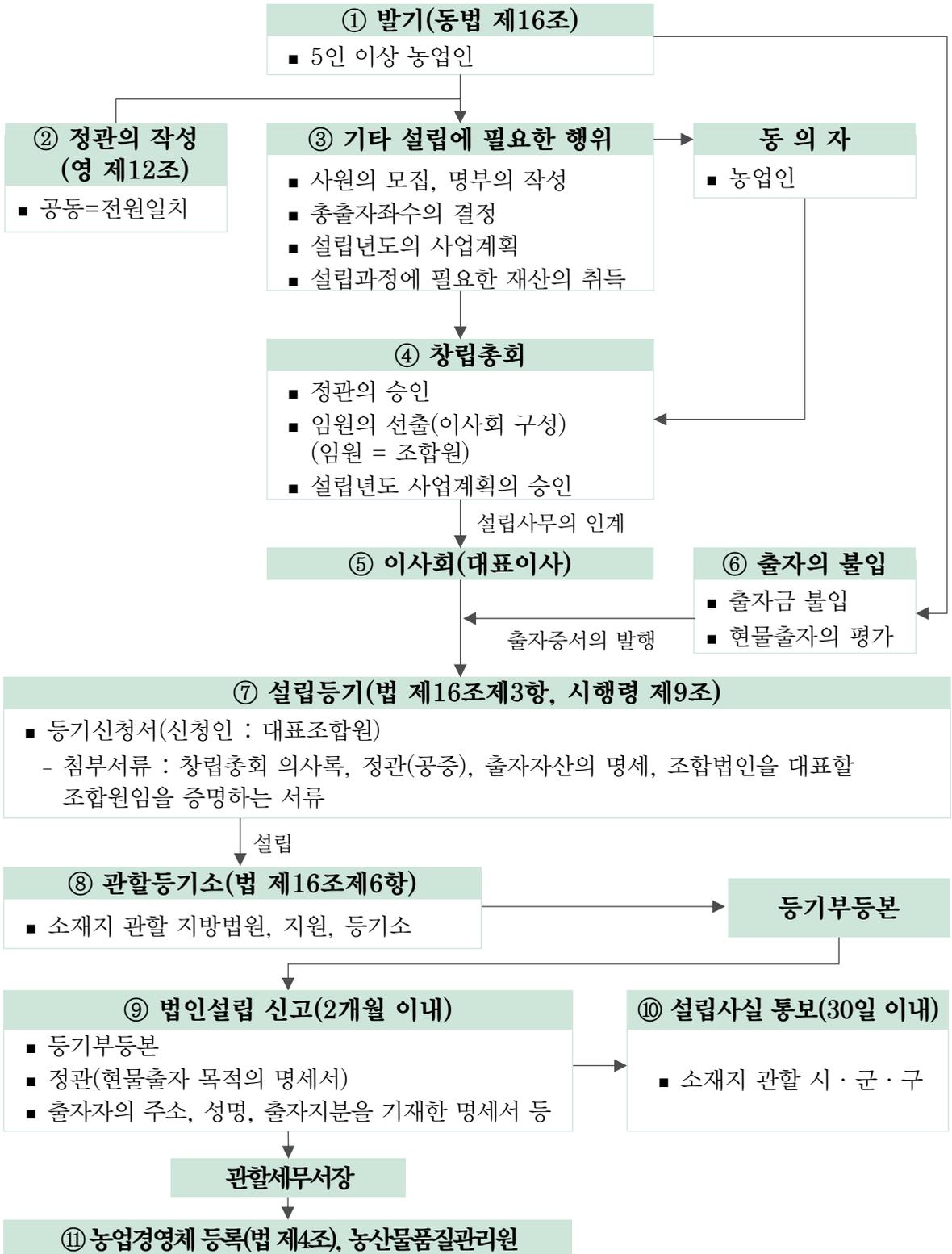


●●●●
두 번째 마당

농업법인 설립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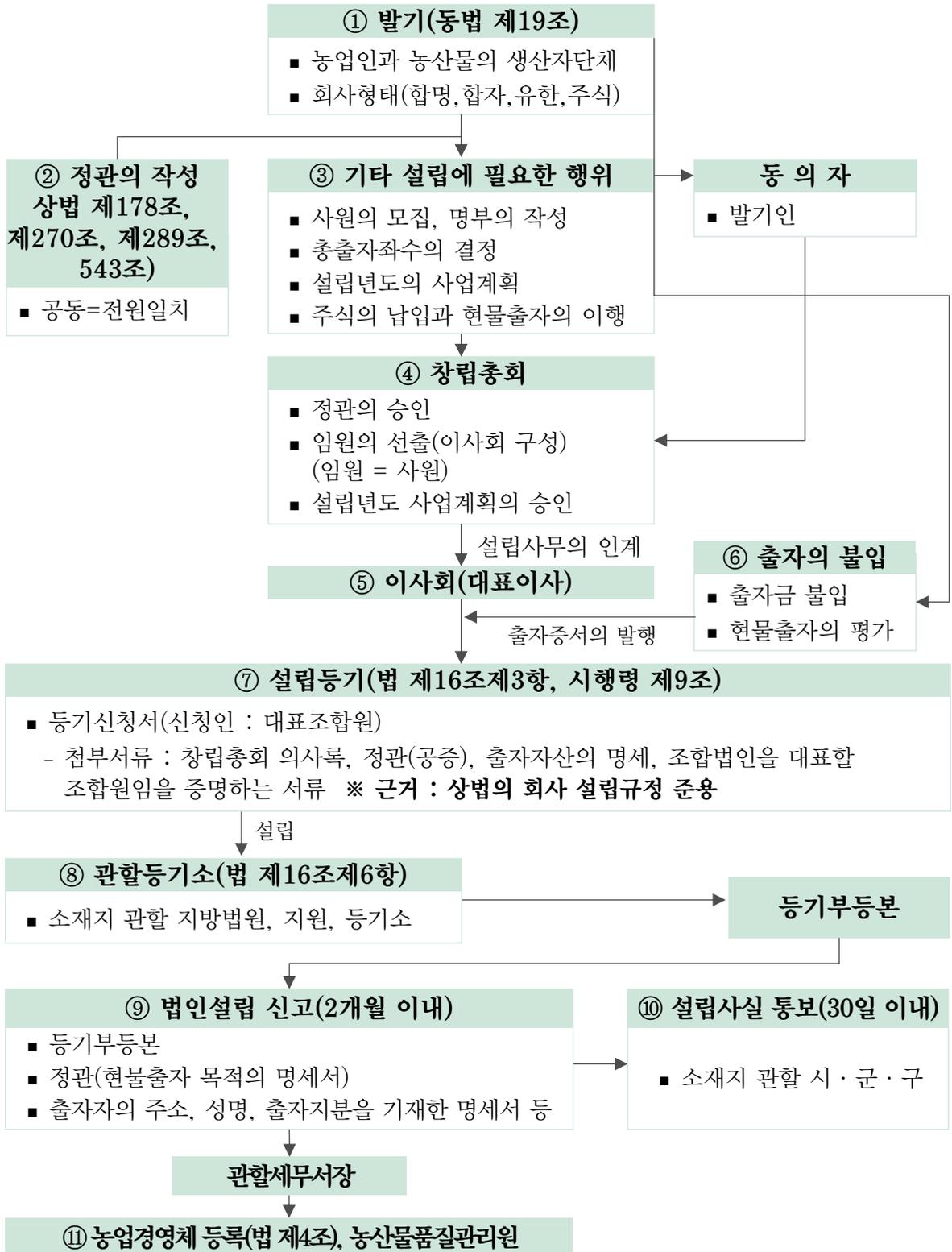
1. 회사의 구성원과 형태를 정하는 발기	51
2. 조직의 활동규칙을 나타내는 정관의 작성	53
3. 설립 신고에 필요한 사전 준비	55
4. 정관 승인과 임원 선임에 위한 창립 총회	55
5. 대표이사과 임원진 선임을 통한 이사회 구성	56
6. 사업 실행을 위한 자본금 출자	57
7. 법적 절차에 따른 설립등기	58
8. 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법인설립 신고	59
9. 설립사실 관할 지자체 통보	59
10. 사업 시작의 첫걸음! 사업자 등록증 발급	59
11.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60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두 번째 마당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법 제18조)

구분	내용
총회소집공고 안내(7일 전)	총회의 일치결의에 의하여야 함으로 전조합원 사전확인 필요
임시총회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결의(전원일치)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의 승인
	임원의 선임
채권자 보호절차	신문공고(1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조직변경 법원등기	본점 2주 이내, 지점 3주 이내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등기
	농업회사법인의 신설등기
사업자등록신청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 이후
	사업자등록
	부동산 상호변경등기
영농조합법인폐업신청	농업회사법인 사업자등록 발급 이후시

* 법률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사업연도는 영농조합사업연도가 계속되며, 청산에 해당되지 않음

영농조합법인의 합병(법 제18조의2)

구분	내용
총회소집공고 안내(7일전)	총회의 일치결의에 의하여야 함으로 전조합원 사전확인 필요
총회	합병계약서 작성 및 합병계약서 승인(총회결의)
	합병의 조건 및 신설조합의 정관승인
	임원의 선임
채권자보호절차	신문공고(1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합병총회(신설합병 창립총회)	흡수합병의 합병총회에서 합병보고, 신설합병 창립총회 개최
합병등기	본점 2주 이내, 지점 3주 이내
	흡수합병: 변경등기
	피합병조합: 해산등기
	신설합병: 설립등기

■ 영농조합법인의 분할(법 제18조의2)

구분	내용
총회소집공고 안내(7일전)	총회의 일치결의에 의하여야 함으로 전조합원 사전확인 필요
총회	분할결의
	분할조합의 정관승인
채권자보호절차	신문공고(1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분할등기	본점 2주이내, 지점 3주이내
	분할법인 사업자등록신청(등기 이후)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의 분할법인으로 등기이전

*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의 상환 및 담보제공 등의 절차를 이행

■ 농업회사법인의 조직변경 및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준용

1. 회사의 구성원과 형태를 정하는 발기



✓ 본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 가. 발기인의 구성

-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 이라고 부릅니다.
-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 발기인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와 같이 그 능력이 제한된 사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과 등기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나. 자본금의 결정

-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상호의 결정

- 농업 법인의 이름을 ‘상호’ 라고 합니다.
- 영농조합법인은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을, 농업회사법인은 ‘농업회사법인’ 과 ‘회사종류(유한, 주식, 합명, 합자)’ 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 : 00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00 / 농업회사법인 00 주식회사)
-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23조 제1항, 제4항).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상업등기법제29조).
- 새로 지은 주식회사의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인터넷등기소 → 법인등기부 → 열람 → 상호검색

2. 조직의 활동규칙을 나타내는 정관의 작성



- ✓ 정관은 조직의 규범이므로, 구성원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 정관의 정의

- 정관은 농업법인의 조직, 사업, 관리, 운영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법인 설립시 발기인 공동으로 작성(전원 합의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하되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① 명칭(법인의 명칭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합자·합명·유한·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
 - ② 목적
 - ③ 사업
 - ④ 사무소의 소재지
 - ⑤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⑥ 조합원 등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⑦ 조합원 등의 탈퇴 및 제명시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 ⑧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 ⑨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⑩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 ⑪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 ⑫ 총회 기타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⑬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 및 변태설립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변태설립사항은 상대적 기재사항 중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상법 290조(변태설립사항)는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합니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특별이익)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현물출자)
 - 회사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재산인수)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설립비용, 보수)
- 변태설립사항은 법원이 선임한 감사인의 조사를 받고, 주식청약서에도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 등의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 발기인은 위의 내용이 담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공증이 없더라도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정관 작성의 예시가 별첨에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정관 제반 근거 :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적용,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 정관 작성 시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설립 신고에 필요한 사전 준비

■ 가. 사업모집과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 조합원 결성 : 정관과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법인에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조합원등 모집
 - 명부의 작성 : 설립 시 조합원의 명부 작성
 - 출자 1좌당 금액과 총 출자 좌수의 결정
 -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4. 정관 승인과 임원 선임을 위한 창립 총회

■ 가. 창립총회의 구성

- 발기인 및 창립 당시의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 나.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정관의 승인
 - ②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 (이사회의 구성)
 - ③ 출자 납입에 관한 사항
 - ④ 설립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

■ 다.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창립총회의 의결은 법인 설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회의경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들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설립등기 시 첨부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및 농업법인 정관(예) 참조)

5. 대표이사과 임원진 선임을 통한 이사회 구성

가. 이사와 감사의 선임

- 주식회사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될 자격을 지니는 사람을 ‘이사’ 라고 하며,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사람을 ‘감사’ 라고 합니다.
- 발기인이 이사 또는 감사를 선택하거나 회사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결권’ 이라고 부르며, 상법 제296조 제2항에 의하여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수만큼 의결권의 수가 정해집니다.
- 주금납입과 현물출자가 완료된 후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6조 제1항)
- 상법 제383조 제1항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3인 이상으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발기인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4인의 발기인 중 3인이 이사가 되고 나머지 1인이 감사가 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7조).

나. 대표이사의 선임

- 대표이사는 설립등기 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대표이사 선임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특별히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하여 뽑습니다.
-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6. 사업 실행을 위한 자본금 출자

가. 출자의 유형 및 범위

- 출자의 이행 방법에는 주금납입과 현물출자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인수를 한 후 인수할 주식금액을 은행에 입금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은행에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현물출자란 돈이 아닌 사무실, 공장부지, 업무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에의 출자는 농지, 현금, 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출자의 불입 및 출자증서의 발행

- 조합원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하고 출자 증서에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등을 기재합니다.
-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 출자최고한도, 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7. 법적 절차에 따른 설립등기

가. 등기시 필수 기재사항

- ① 명칭
 - ② 목적
 - ③ 사업
 - ④ 사무소의 소재지
 - ⑤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 ⑥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⑦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 ⑧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공동대표) 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기타 등기 시 기재사항은 상법상 관련규정을 준용 합니다.

나. 등기신청시 첨부서류(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

- ① 창립총회의사록
 - ② 정관
 - ③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 ④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첨부서류 작성법은 별첨 부분을 참고하세요.

8. 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법인설립 신고

-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는 이제까지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설립할 주식회사의 본점이 있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최종적으로 설립되며 법인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9. 설립사실 관할 지자체 통보

- 설립 등기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설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14~18 참조

10. 사업 시작의 첫걸음! 사업자 등록증 발급

-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후에는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절차 안내 및 서식제공
 -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
- ☞ 제출서류 작성법은 별첨 부분을 참고하세요.

11.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가. 추진현황 및 체계

(1) 추진 배경

-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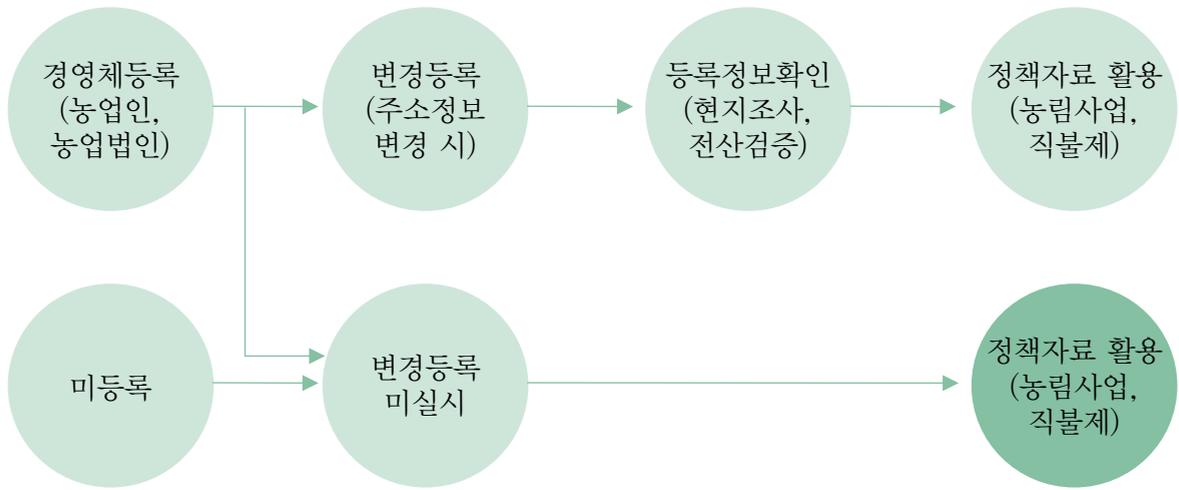
(2) 추진 경위

- '04. 2월 : 농림부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가등록제」, 「소득안정계정」 도입 검토
- '06. 12월 :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
- 고소득 취미농을 제외한 개인과 법인경영체가 등록 신청
- '07. 9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추진
- 등록기간 및 주관기관 : '07. 8~11월(4개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시범사업결과 : 대상농가 5,591농가 중 4,506농가 등록(등록율 81%)
- '08. 6월 : 농업경영체 등록 본사업 추진
- 일괄등록(~'09.12.31)과 상시관리('10~)체제로 구분하여 추진
- '09. 10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영체는 경영정보 등록(제4조)
- '10.1월 :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 구축

(3) 추진 체계

- 상시관리는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 확인 단계로 추진
- 신규등록은 예비·본등록 단계를 통합하여 단일단계로 등록
- 변경등록은 중요정보 위주로 변경기준을 정하여 관리
- 등록정보 확인은 일제검증과 현지조사·전산검증으로 구분추진
-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우선 적용 가능한 사업부터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법 제8조)

〈 상시관리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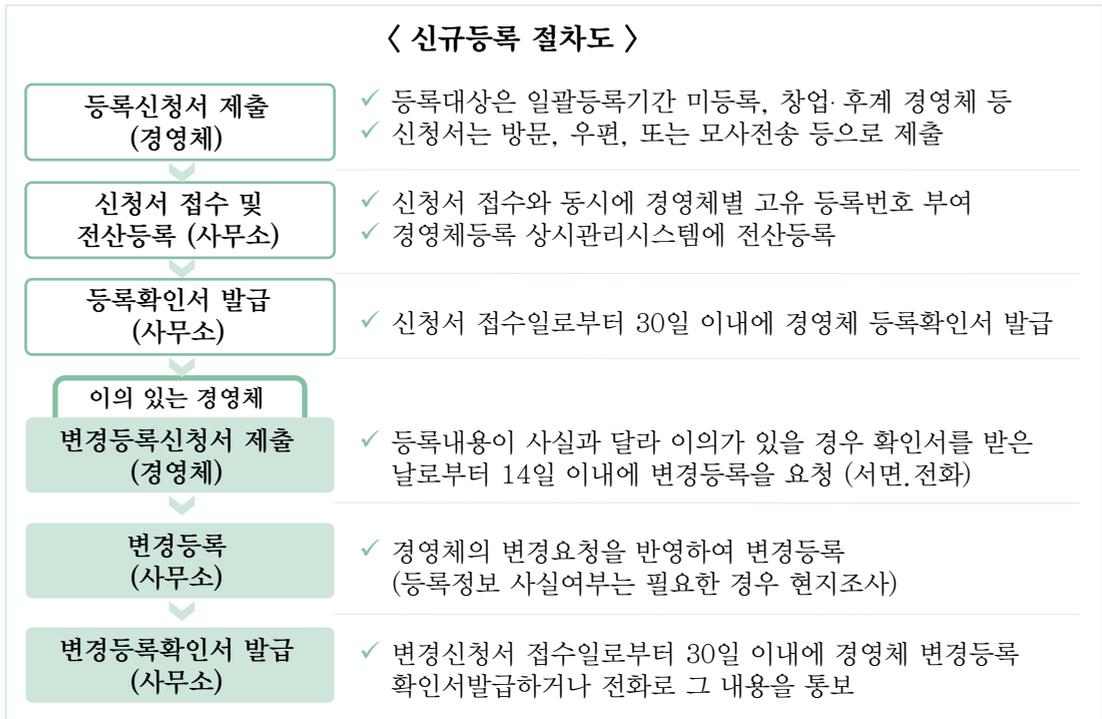
나. 등록내용 및 절차

(1) 신규등록

- 대상 경영체
 -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 시 등록 가능
 - 등록대상 품목
 - 등록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 등록대상 농지
 -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등록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60개 항목
 - 등록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이하 '사무소' 라고 함)에 제출
 - 신청 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 ※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임으로 신규신청 방법에서 제외

■ 등록절차 및 요령

- 경영체에서는 임의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법인용)를 사무소에 제출



(2) 변경 등록

■ 대상 경영체

- 변경된 등록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하려는 경영체
-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 신청인

- 농업인 경영체는 경영주인 농업인, 법인 경영체는 대표자가 신청
 - ※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신원 확인) 가능(농가는 경영주의 배우자 등 농업인 또는 직계 존비속, 농업법인은 조합원 또는 사원)

■ 신청 시기 및 기간

- 등록된 경영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중요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 사무소장은 전산등록이 완료된 경영체에 대하여 변경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 하거나 전화로 변경등록통지서 내용을 통보

< 변경등록 절차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출장소 (부서)명	일반전화	Fax	주 소	우편번호	관할구역
품질관리과	031)445-5514	443-409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4 (안양6동 532-9)	14035	안양시 광명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서울	02) 2242-6060	2244-02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1 (장안1동 432-2)	05816	서울특별시
인천	032) 821-6060	819-7257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말로 47번길 30(선학동 390-6)	21909	인천광역시 (강화군제외)
수원	031) 295-8070	295-589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동로 14번길 84(서둔동 27-59)	16619	수원시
화성·오산	031) 898-6194	898-6198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2 병점프라자 503호 (병점동 379- 10)	18411	안산시 화성시 오산시
의정부· 동두천·양주	031) 874-6061	874-4130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39(가농1동 617-10)	11676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평택	031) 657-6064	657-6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42(비전동 633-24)	17895	평택시
안성	031) 671-6061	671-6066	경기도 안성시 석정1길 14(석정동 265-2)	17578	안성시
구리·남양주	031) 565-6060	557-6594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28 (교문동 737-8)	11935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	031) 581-6060	582-7553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200-21(읍내리 616-7)	12413	가평군
성남·하남· 광주	031) 766-6060	765-9337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1422번길 11-12(쌍령동 337-5)	12791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용인	031) 638-6060	635-0308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724(신원리 647-18)	17318	이천시 용인시
파주·고양	031) 953-6061	954-6094	경기도 파주시 개포래로 66(문산리 10-102)	10823	파주시 고양시
포천·연천	031) 534-6060	535-6063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 3384 (군내면 구읍리 571-6)	11153	포천시 연천군
여주	031) 886-6060	883-1320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중부대로 2799-24(왕대리 947-17)	12642	여주시
양평	031) 711-6064	771-673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한빛길 38(양근리 221-6)	12562	양평군
강화	032) 933-6060	934-2707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8 (관청리 889-2)	23032	강화군
김포	031) 986-6060	986-2425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 35-1 (북변동 409-7)	10106	김포시 부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출장소 (부서)명	일반전화	Fax	주 소	우편번호	관할구역
품질관리과	033) 254-3401	251-0205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125 (우두동 429-5)	24226	춘천시 화천군
원 주	033) 744-6060	743-6491	강원도 원주시 복원로 2236(원주종합청사내) (단계동 783)	24624	원주시
횡 성	033) 344-5224	344-5229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동2로 83 (읍상리 195-4번지)	25230	횡성군
강 룡	033) 651-6061	651-9764	강원도 강릉시 하평2길 31 (포남2동 1295-3)	25566	강릉시
삼척·동해	033) 574-6060	573-7831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 3 (원당동 7-3)	25918	삼척시 동해시
속초·양양	033) 631-6060	637-4151	강원도 속초시 온천로 136	24864	속초시 양양군
고 성	033) 681-6070	681-6079	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북로 103 (동호리 760-3)	24731	고성군
홍 천	033) 435-6060	435-4334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69 (결운리 467-1)	25126	홍천군
영 월	033) 374-6060	373-702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4번길 24 (영흥리 961-9)	26227	영월군
평 창	033) 333-6060	333-0628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52 (종부리 508-8)	25377	평창군
정선·태백	033) 563-6060	563-606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55-13 (봉양리 65-5)	26127	정선군 태백시
철 원	033) 452-2504	452-124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39 번안길 15 (지포리90-2)	24037	철원군
인 제	033) 461-6060	461-9786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65 (상동리 310-7)	24625	인제군 양구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출장소 (부서)명	일반전화	Fax	주 소	우편번호	관할구역
품질관리과	043) 271-9709	279-414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20번길 46 (봉명동 2451)	28462	청주시 청원군
충 주	043) 843-6060	847-2421	충북 충주시 대흥4길 7 (교현동 1093)	27370	충주시
제천·단양	043) 646-6060	646-2733	충북 제천시 동명로 61 (명동 175-2)	27171	제천시 단양군
보 은	043) 544-6060	543-2046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49 (삼산1리 99-17)	28951	보은군
옥 천	043) 731-6060	731-0255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8 (매화리 33-1)	29043	옥천군
영 동	043) 744-7561	744-4611	충북 영동군 영동읍 회동로 132 (회동리 54-3)	29141	영동군
진 천	043) 537-6060	537-9954	충북 진천군 진천읍 덕금로 65 (성석리 326-2)	27844	진천군
괴산·증평	043) 832-6060	832-2047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4길 39 (서부리 277-2)	28035	괴산군 증평군
음 성	043) 873-6060	873-4060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57번길 15	27704	음성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출장소 (부서)명	일반전화	Fax	주 소	우편번호	관할구역
품질관리과	042) 256-9462	256-427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27(선화동 188-5)	34851	대전광역시
천 안	041) 551-6060	555-819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73-7 (신부동 873)	31117	천안시
공주·세종	041) 853-6060	856-4487	충남 공주시 전막1길 6-11 (신관동 591-6)	32573	공주시 세종시
서산·태안	041) 663-6060	663-5191	충남 서산시 수석산업로 25 (수석동 1-76)	32010	서산시 태안군
논 산	041) 736-6060	736-9030	충남 논산시 체육로 78 (취암동 51-8)	32993	논산시 계룡시
부 여	041) 835-3301	836-3301	충남 부여군 규암면 홍수로 551(합송리 1120)	33120	부여군
보 령	041) 932-6060	934-0756	충남 보령시 체육관길 16 (죽정동 418-10)	33441	보령시
홍성·청양	041) 631-7290	631-7294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00 (고암리 548-5)	32232	홍성군 청양군
예 산	041) 335-6060	331-2540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령사로 36 (향천리 295- 55)	32433	예산군
당 진	041) 354-6060	356-4669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1로 167 (읍내동 270-7)	31770	당진시
서 천	041) 952-1521	952-152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126(화금리 624)	33633	서천군
아 산	041) 547-6080	547-6084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0-26(염성리 194-3)	31445	아산시
금 산	041) 752-6060	754-4977	충남 금산군 금산읍 용머리길 28 (아인리 81-4)	32742	금산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출장소 (부서)명	일반전화	Fax	주 소	우편번호	관할구역
품질관리과	063) 243-9514	243-95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운암로 31(팔복동2가 834-2)	54853	전주시 완주군
익 산	063) 841-6060	841-3094	전북 익산시 무왕로 1646(덕기동381-2)	54570	익산시
군 산	063) 452-6399	452-5071	전북 군산시 조촌5길 59 (조촌동 856-9)	54076	군산시
남 원	063) 635-6060	635-6064	전북 남원시 충정로 252 (월락동 497)	55736	남원시
순 창	063) 653-4272	653-4276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304(순화리 464-4)	56037	순창군
정 읍	063) 533-6060	533-1662	전북 정읍시 연지1길 31 (연지동 305-33)	56158	정읍시
김 제	063) 548-6060	548-8766	전북 김제시 벽골제로 819 (입석동 408-1)	54416	김제시
부 안	063) 582-6060	581-3448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21-6(서외리 455-43)	56311	부안군
진안·장수	063) 432-6060	433-0606	전북 진안군 진안읍 대광길 11(군하리 295-1)	55426	진안군 장수군
무 주	063) 322-6060	322-6070	전북 무주군 무주읍 향학로 90(읍내리 401-1)	55520	무주군
고 창	063) 563-6060	561-0437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64(덕산리 866)	56443	고창군
임 실	063) 643-6061	644-6066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556-10(오정리 133-2)	55930	임실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출장소 (부서)명	일반전화	Fax	주 소	우편번호	관할구역
품질관리과	062) 970-6244	970-6259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00(월계동 868-5)	62276	광주광역시
목포·신안	061) 243-6060	242-9423	전남 목포시 호남로 64번길 19(대안동 5)	58723	목포시 신안군
여수	061) 651-6060	651-5148	전남 여수시 문수로 129 (문수동 111)	59700	여수시
순천·광양	061) 742-6060	742-4706	전남 순천시 지현길 100 (덕월동 412-2)	57997	순천시 광양시
나주	061) 333-2136	333-2137	전남 나주시 송월4길 1 (송월동 1355)	58261	나주시
담양·장성	061) 381-6060 394-6060	383-7791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5길 49(천변리 391-7)	57348	담양군 장성군
곡성·구례	061) 363-9321	363-9326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1길 6(읍내리 778번지)	57537	곡성군 구례군
고흥	061) 832-6060	834-3931	전남 고흥군 고흥읍 봉황길 11(옥하리 213-1)	59538	고흥군
보성	061) 852-2641	853-6050	전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81번지(보성리 897-3)	59457	보성군
장흥	061) 863-6060	864-6065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7(견산리 715-1)	59328	장흥군
강진·완도	061) 434-6060	434-4411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17(동성리 66-8)	59240	강진군 완도군
해남·진도	061) 536-9552 543-6060	536-9639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35(해리 221-1)	59038	해남군 진도군
영암	061) 543-6060	473-5495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주로 195(역리 168-2)	58414	영암군
무안	061) 453-8270	453-8273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74(성남리 189-1)	58531	무안군
영광	061) 353-3737	353-3739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 1430(녹사리 65-18)	57049	영광군
함평	061) 322-6060	324-5424	전남 함평군 함평읍 신기산길 16(기각리 912-1)	57147	함평군
화순	061) 373-6161	373-6665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74-2(일심리 533)	58105	화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출장소 (부서)명	일반전화	Fax	주 소	우편번호	관할구역
품질관리과	053) 320-5213	327-0733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76 (동천동 892-1)	41423	대구광역시
포항·울릉	054) 253-6060	254-6062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로 13 (두호동 616-1)	37709	포항시 울릉군
경 주	054) 743-6060	774-6861	경북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490 (하구리 1004-4)	38048	경주시
김 천	054) 437-6060	433-0189	경북 김천시 혁신로 316-11 (울곡동 6-1440)	39660	김천시
안 동	054) 856-6060	841-4887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367 (안기동 285-3)	36626	안동시
구미·칠곡	054) 457-6060	453-3100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14-5 (송정동 68)	39280	구미시 칠곡군
영주·봉화	054) 634-6060 054) 672-6060	635-5248 672-1186	경북 영주시 영주로 86번길 30 (가흥동 1516번지)	36134	영주시 봉화군
영 천	054) 332-6060	334-2041	경북 영천시 어봉길 78 (대전동 348-1)	38821	영천시
상 주	054) 536-6060	534-2170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233 (성하동 13-1)	37190	상주시
문 경	054) 553-6060	553-3063	경북 문경시 남부4길 26 (모전동 63-3)	36950	문경시
경산·청도	053) 816-6060 053) 371-6060	815-0347 370-6879	경북 경산시 자인면 한장군로 242	38549	경산시 청도군
의성·군위	054) 832-6060 054) 383-6060	834-6649 383-1189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5223 (분토리 922-3)	37360	의성군 군위군
청송·영양	054) 874-6060	872-7792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리 215 (각산리 503-37)	37405	청송군 영양군
영 덕	054) 732-6060	734-0940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29 (남석리 230-1)	36433	영덕군
성 주	054) 931-6060	955-9236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주로 3757-11 (관화리 1091-3)	40045	성주군
고 령	054) 954-6060	933-2022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공단1길 11 (고아리 112-1)	40141	고령군
예 천	054) 655-6060	655-6061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204 (서본리 224-1)	36826	예천군
울 진	054) 782-6060	782-2436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404 (읍내리 230-2)	36326	울진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출장소 (부서)명	일반전화	Fax	주 소	우편번호	관할구역
품질관리과	055) 275-2822	275-282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9번길16(용호동 8-5)	51430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부 산	051) 868-6060	864-7376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93(강동동 20)	46705	부산광역시
울 산	052) 265-6060	260-39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436(반송리 425-1)	44936	울산광역시
진 주	055) 759-6060	759-6031	경남 진주시 솔밭로 80번길 16(상평동 221-5)	52805	진주시
사 천	055) 855-2812	855-2815	경남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0(신복리 500-6)	52538	사천시
통영·거제	055) 648-6060	649-1215	경남 통영시 광도면 향교옆길 86(죽림리 379-5)	53021	통영시 거제시
고 성	055) 674-6060	673-6046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24-61(교사리 119-1)	52932	고성군
밀 양	055) 352-6060	356-3909	경남 밀양시 중앙로 128 (가곡동 656-3)	50444	밀양군
김해·양산	055) 321-6060	336-3044	경남 김해시 전하로 63번길 8-9 (홍동 42-8)	50965	김해시 양산시
함안·의령	055) 582-6060	583-260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3길 29(말산리 611-1)	52046	함안군 의령군
창 녕	055) 533-6060	532-7895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길 104 (여초리 213)	50334	창녕군
하 동	055) 884-6060	883-1990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75(광평리 427)	52328	하동군
남 해	055) 864-6060	864-7883	경남 남해군 고현면 탑동로 37 (대사리 684)	52404	남해군
함양	055) 962-6060	964-0332	경남 함양군 함양읍 영림서길 32(백연리 67-1)	50044	함양군
산청	055) 972-6060	972-2123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4(산청리 239)	52222	산청군
합 천	055) 931-6060	932-0818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핫들1로 50(영창리 486)	50231	합천군
거 창	055) 942-6060	944-063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59(김천리 169-22)	50147	거창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출장소 (부서)명	일반전화	Fax	주 소	우편번호	관할구역
품질관리과	064) 728-5210	728-5212	제주시 청사로 59(도남동 662) 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63219	제주시
서귀포	064) 735-4900	735-4902	제주도 서귀포시 신희중앙로17 (신희동 633-2)	63606	서귀포시

사 례



영농조합법인 이사회에 소집권에 대해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영농조합법인 정관례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대표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와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가 서로 대등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의 동의가 없어도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가 소집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세요!

사 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정관을 정하는데 있어서 "1조합원 1의결권"이 아니라 "각 조합 원의 출자지분율에 따른 의결권"으로 정관에 정했다면 이 정관이 영농조합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규에 위배되는지요?

답 변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 의사결정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총 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관으로 그 내용을 정한 경우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 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대사업)에서의 영농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 변



영농이라 함은 농업경영(농작물 재배 등)을 의미하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제2조제10호에 의하면 "농업경영"이란 농업인 등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시)농업법인이 다른 농가(농장)에서 화분에 담겨진 분화류를 매입하여 판매장에서 단순 판매하는 행위는 영농의 범주로 포함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동 행위는 판매를 목적으로 임시로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세요!

사 례



마을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조합원의 구성원을 편의상 마을의 주요관계자 (이장, 지도자, 청년회, 부녀회, 작목반, 노인회 등)로 한정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와 전체 마을 주민세대주들이 조합원이 되는 경우의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 변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 조합원 구성을 마을 주요관계자 또는 주민 전체로 할 지 여부는 마을 총회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의사결정 할 사항입니다. 다만,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의사 결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합니다.

* 설립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참조

*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기준(정의) 근거 : “농업·농촌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 등” 참조

사 례



농업법인의 명칭을 반드시 “영농조합법인00”,
“농업회사법인00주식(유한·합명·합자)회사”
으로 하여야 하는지 “농업법인00” 또는
“00주식회사” 로 정할 수는 없나요?

답 변



법인명칭 특수법인인 점과 설립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농업법인 상호에는 농업법인의 종류를 구별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명칭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추가로 회사종류(유한·주식·합명·합자)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 :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주식회사○○농업회사법인)

국세청 및 통계청 등 유관기관에서도 세제지원 시 농업법인인지 여부를 명칭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행정지원으로부터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명칭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세요!

사 례



일반 상사법인이 농업 및 부대사업 실적 없이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추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농업법인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른 설립요건(명칭변경, 비농업인
출자한도, 목적, 사업의 범위 등)을 갖추어 정관변경, 총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으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사 례



조합원과의 갈등으로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 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산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청산업무는 총 조합원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고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청산인)가 청산 사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청산인은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 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분합니다.

해산 및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각 조합원들은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 조합의 대표자가 해산결의서를 공증받아 이를 해산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신청합니다.



세 번째 마당

농업법인 운영에 필요한 회계 · 인사 · 법무 정보

1. 법인 경영의 핵심! 회계	83
2. 법인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사 · 노무	102
3. 법인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법무 정보	119
4. 법인 설립과 운영 시에 고려해야 할 점	127

1. 법인경영의 핵심! 회계



- ✓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을 파악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영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 농업경영기록의 목적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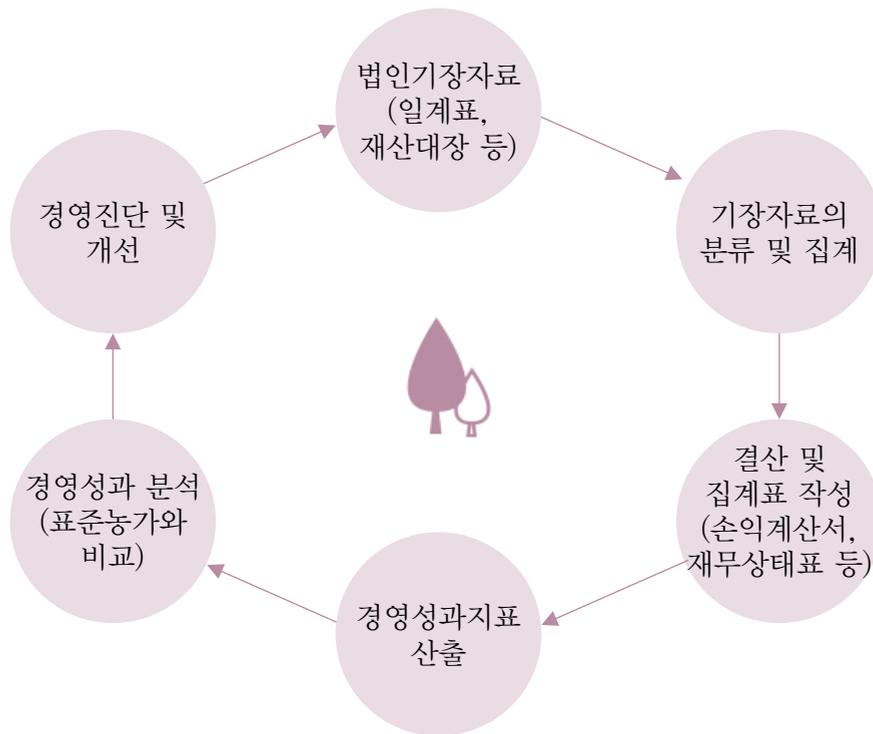
1) 농업경영 기록의 목적

- 우리가 농업 법인체를 설립하게 되면 수지가 얼마인지, 왜 손해를 보았는지에 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경영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자가 농업을 영위하여 수지를 맞추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성과 분석, 경영진단과 설계, 경영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것이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 기록을 위한 장부작성 입니다.
- 농업경영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업회계의 정보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보이용자란 구체적으로 경영주(농업인 자신), 투자자, 종업원, 금융기관, 정부, 세무서 등 법인 경영체를 둘러싼 모든 경제주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 농업경영에서 경영기록의 필요성

- 농업법인의 경영개선에 경영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먼저 개선이란 나쁜 점을 고쳐서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나쁜 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농업법인경영의 결함을 발견해야 하고, 결함의 발견을 위해서는 농업법인 경영의 실태를 알아야 합니다.
- 농업법인의 경영주는 자신의 경영체에 대한 경영의 실태를 어느 정도까지 파악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영주는 농경지가 몇 평이고, 쌀을 몇 가마나 생산 하였고, 질소비료는 몇 포를 사용하였고, 모내기에는 얼마만큼의 노동이 투입 되었다고 하는 개개의 기술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기억도 상당히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경영주가 자신의 재산총액, 농업투자자본액, 직원노동의 연간 이용일수, 작목별 노동 투자일수, 연간의 농업소득, 작목별 연간 농업소득, 주요작물의 단위당 생산비 등의 경제적인 사실이나 종합적인 사항에 이르면 자신이 없고, 대체적인 어림짐작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 법인경영에는 여러 종류의 농업자산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 유통, 가공합니다. 따라서 법인경영의 실태는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억이나 간단한 메모에 의하여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경제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면 그 내용이 매우 부정확한 것이 되기 쉽습니다.
- 따라서 법인경영의 실태를 분명한 약속과 매일의 기록을 통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업부기의 작성이 필요하며, 농업부기는 법인 경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 농업부기를 작성하지 않는 농가는 종종 나침반이 없는 배나, 바늘이 없는 시계에 비유되기도 하며, 따라서 농가의 경제나 경영의 개선에 부기기장이 필요하고, 이것이 부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 경영기록 및 진단 과정은 다음 여섯 단계에 거쳐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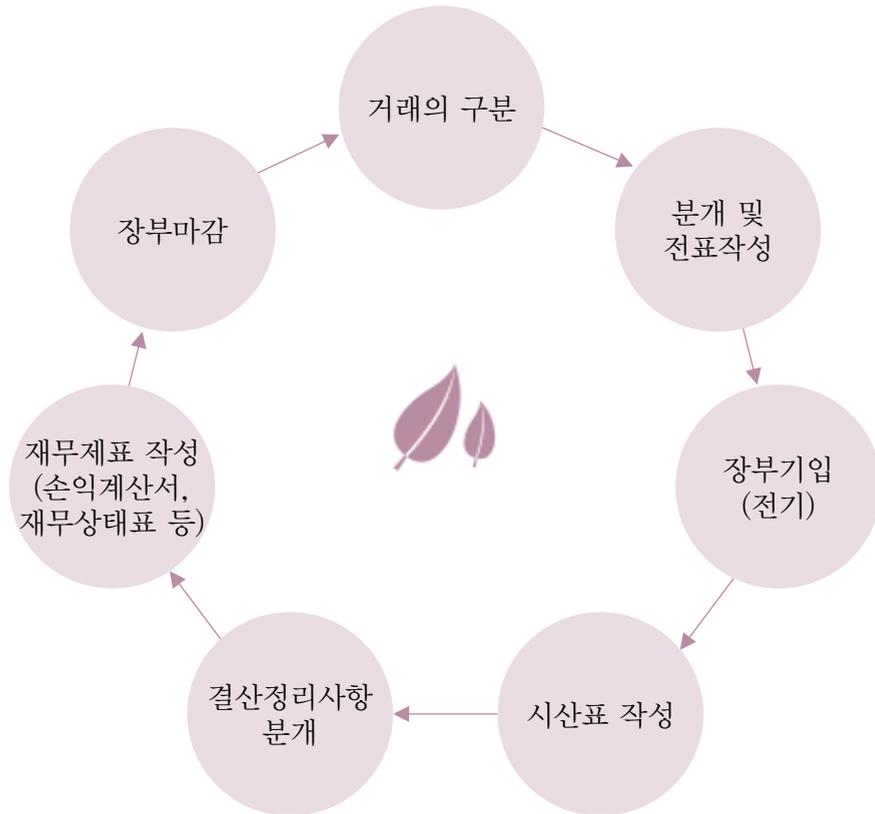


〈그림 1〉 경영기록 및 진단 과정

나. 농업경영기록 방법

■ 경영기록과정

- 경영기록과정은 반드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대체로 다음의 7단계로 나누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림 3〉 경영기록과정

1)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이해

-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는 농업경영체가 영농활동을 하여 얻은 성과를 영농이 끝나는 시점에 작성하는 성적표를 의미합니다.
- 재무상태표는 농업경영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회계기간이 끝나는 회계연도 말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한 표이고, 손익계산서는 농업경영체가 일정기간(회계기간) 동안의 영농활동에서 얻은 총이익과 소비한 총비용을 계산하여 회계기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 혹은 1년 동안 지출한 순비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한 표를 말합니다.

1-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산항목은 유통자산인 현금, 외상매출금과 비유통자산인 대동물, 대농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채및 자본의 항목에는 부채인 차입금과 자본인 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본금에 포함되어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5. 12. 31 현재)

자 산 (차변)		부 채 및 자 본 (대변)	
현 금	840,000	차 입 금	500,000
외 상 매 출 금	600,000	자 본 금	1,640,000
대 동 물	550,000	(당기순이익)	(40,000)
대 농 기 구	150,000		
합 계	2,140,000	합 계	2,140,000

〈표 1〉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는 농업경영체의 재산상태를 일정시점(회계연도말)에서 정리하여 회계기간 동안에 변화한 재산의 증감상태를 간결하게 표시한 일람표입니다.
- 재무상태표는 이름과 같이 차변(재무상태표의 왼쪽)과 대변(재무상태표의 오른쪽)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표이며, 재무상태표의 차변에는 농업경영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변에는 자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원을 부채(타인자본)와 자본(자기자본)의 순서로 기록한 것을 의미합니다.
- 재무상태표의 차변, 즉 자산의 합계와 대변, 즉 부채와 자본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1-2)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는 비용항목과 수익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항목의 내용을 보면, 총비용은 사료비, 인건비, 잡비로 구성되어 있고, 총수익은 대동물수익입니다.
- 총비용 항목에는 당기순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기순이익이 비용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에서 발생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나머지가 순수익입니다.
- 재무상태표에서 본바와 같이 손익계산서에서도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차변(총비용)과 대변(총수익)을 일치시키면 그 차액이 순수익이 되며 이때 순수익을 그 당시의 회계기간에 발생한 순수익이라 하여 당기순이익이라 합니다.
-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을 단위로 회계기간 이내에 발생한 총이익과 총비용을 계산하여 어느 정도의 순이익 혹은 순손실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밝히는 계산서입니다.
- 국내 축산농가의 사례를 이용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농가가 대동물을 사육하기 위하여 사료비, 인건비, 잡비 등 1,600,000원의 비용을 투입하고, 대동물을 판매하여 대동물수익을 2,000,000원 얻었다면, 이때 축산농가의 당기순이익은 400,000원이 됩니다.

(2015. 1. 1 - 12. 31)

비 용		수 익	
사 료 비	1,000,000	대 동 물 수 익	2,000,000
인 건 비	500,000		
잡 비	100,000		
당 기 순 이 익	400,000		
합 계	2,140,000	합 계	2,000,000

〈표 2〉 축산농가 손익계산서

1-3) 거래의 의미

- 거래란 물건을 구입하고, 혹은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주고 받는 행위를 의미. 농업부기 혹은 농업회계에서도 일반 상거래의 의미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 이러한 거래를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항목인 자산, 부채, 자본과 손익계산서의 구성항목인 수익, 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자산, 부채, 자본과 수익, 비용의 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을 표시합니다.
- 예를 들면, 자산의 증가 혹은 감소란, 농업경영체가 영농을 위하여 논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면 토지라는 비유동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유동자산이 감소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비유동자산인 대농기구를 현금을 받고 팔았다면, 대농기구 자산이 감소하고, 그 대신 현금을 받았으므로 유동자산인 현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종류의 자산이 증가하면, 어떤 종류의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자산이 감소하면, 어떤 종류의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자산과 자산간에 증가와 감소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산과 부채간에 증가와 감소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각각의 항목간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거래의 8가지 요소간의 변화라 합니다.
- 거래의 8가지 요소
 - 거래란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 비용의 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며,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가 혹은 감소하지만,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인 수익, 비용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만약 법인이 경운기를 구입하면, 대농기구 자산이 증가한 반면에 현금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비료를 농장에 살포하는 경우에는 비료 비용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작물을 수확하는 경우에 농작물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를 표로써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차변, 대변에 각각 4개의 요소가 있으며, 이들 8개의 요소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 비용 등의 증가 혹은 감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차변	대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 거래의 이중성

- 복식부기에서는 거래의 기입을 차변, 대변의 양변에 기록함으로써, 차변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대변에도 동일한 금액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며, 이를 거래의 대립관계라고도 합니다.
- 예를 들면 농업경영주가 경운기 1대를 현금 1,50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거래는 경운기라는 대농기구 자산이 1,500,000원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현금 자산 1,500,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복식부기에서 차변,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대농기구(경운기)	1,500,000원	(대변) 현금	1,500,000원
----------------	------------	---------	------------

-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차변에 대농기구 자산 1,500,000원이 증가하면, 대변에도 동일한 금액의 현금이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1-4) 분개의 법칙

- 분개는 거래의 8가지 요소의 대립관계를 이용하여 차변, 대변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거래의 8가지 요소를 이용하여 분개를 하면 모두 15가지 방법의 분개 종류가 있습니다. 분개의 종류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만 숙지하면 일반적인 전산회계 프로그램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오늘 관리기 1대를 3,00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
(차변) 대농기구 3,000,000원 (대변) 현금 3,000,000원

(2)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오늘 트랙터 1대를 30,00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 지급
(차변) 대농기구 30,000,000원 (대변) 외상매입금 30,000,000원

(3)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

경영주가 현금 5,000,000원을 자본금으로 출자
(차변) 현금 5,000,000원 (대변) 자본금 5,000,000원

(4)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

배추를 100통을 수확하여 현금 500,000원에 판매
(차변) 현금 500,000원 (대변) 배추판매수익 500,000원

(5)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농협에서 빌린 차입금 2,000,000원을 현금으로 갚음
(차변) 차입금 2,000,000원 (대변) 현금 2,000,000원

(6) 부채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농약 외상매입금 500,000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차변) 외상매입금 500,000원 (대변) 지급어음 500,000원

(7) 부채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자본금 2,000,000원을 증자하고 농협 차입금을 상환
(차변) 차입금 2,000,000원 (대변) 자본금 2,000,000원

(8) 부채의 감소와 수익의 발생

채권자로부터 채무 200,000원을 면제 받음
(차변) 차입금 200,000원 (대변) 채무면제이익 200,000원

- (9) 자본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경영주가 현금 1,000,000원을 자녀학비로 인출함
 (차변) 자본금 1,000,000원 (대변) 현금 1,000,000원

 - (10) 자본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경영주가 자신의 차입금 1,000,000원을 농업경영의 차입금으로 옮김
 (차변) 자본금 1,000,000원 (대변) 차입금 1,000,000원

 - (11)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
 홍길동의 출자금 500,000원을 박문수의 출자금으로 옮김
 (차변) 자본금 500,000원 (대변) 자본금 500,000원

 - (12) 자본의 감소와 수익의 발생
 홍길동의 사망으로 홍길동의 출자금을 인수할 사람이 없어 잡수익으로
 처리함
 (차변) 자본금 500,000원 (대변) 잡수익 500,000원

 - (13) 비용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
 지급이자 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차변) 지급이자 20,000원 (대변) 현금 20,000원

 - (14) 비용의 발생과 부채의 증가
 농약 50,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살포함
 (차변) 농약비 50,000원 (대변) 외상매입금 50,000원

 - (15) 비용의 발생과 자본의 증가
 홍길동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중 500,000원을 출자금으로 전환함
 (차변) 노임 500,000원 (대변) 자본금 500,000원
- 이상에서 예시한 분개의 방법을 잘 활용하면, 법인경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분개하여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 계정

■ 계정의 의의

- 최근 농업부문에다 컴퓨터의 보급과 이용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촌 진흥청, 농협중앙회 등 농업관련 기관에서 농업경영분석을 위한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 농업인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계정 과목에 대한 이해부족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가 계정과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농업경영실태를 입력하려면, 먼저 농업용 자산에 대한 기입을 요구하고, 다음으로 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정과목을 입력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며, 이때 계정과목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계정과목을 확정하지 못해 컴퓨터를 닫아버리는 많은 사례를 경험하였습니다.
- 본서의 계정과목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며, 다만 계정과목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정과목이란 간단하게 표현하면 농업부기를 간편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하나의 계산단위이며, 또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시설채소 농가에서 살충제 1병을 5,000원에 구입하였다면 이를 농약비라는 계정과목으로 설정하고, 농약구입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농약비 계정에 정리하면 후일 결산시에 투입된 총농약비의 크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계정과목은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부를 작성하는 초기에 항목을 다양하게 구분해 두면 후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부기를 작성하려는 초기에 미리 계정과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 계정의 분류

- 계정은 크게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계정으로 구분하며,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 비용계정으로 구분합니다.

-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계정은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유동자산 계정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들로 대표적인 것이 현금, 당좌예금, 대부금, 외상매출금 등이 있으며 농업의 경우 소식물, 소동물, 소농기구, 미판매현물, 구입현물, 중간생산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비유동자산 계정은 현금화 하는데 1년 이상이 필요한 자산들로 토지, 건물, 구축물, 시설장치, 기계장치, 운송기기, 비품 등과 대식물, 대동물, 대농기구계정 등이 있습니다.
- 부채 계정은 1년 이내에 상환이 필요한 유동부채와 1년 이상 상환이 이루어지는 장기부채인 비유동부채로 나뉘어 집니다. 유동부채로는 차입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계정 등이 있고 비유동부채로는 장비구입 할부금이나 후계농대출자금 상환 등이 있습니다.
- 자본 계정은 자본금, 잉여금, 순이익계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계정은 농산물 판매수익계정이며, 이를 계정과목으로 구분하면, 채소판매수익, 오이판매수익, 축산물판매수익계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비용 계정은 농산물 생산에 직접 소요된 재료인 재료비 계정과 인력 조달을 위해 지불된 노무비, 그리고 기타 농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나 유류대와 같이 간접적으로 필요한 재료인 경비, 마지막으로 농산물을 생산 이후에 판매하기 위해 소요된 각종 포장비와 운송, 홍보비 등의 계정인 판매관리비(판관비) 계정이 있습니다.
- 이상에서 각각의 계정과목을 예시하였지만, 계정과목은 법인의 경영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계정과목은 부기를 작성하는 초기 연도에 한번 설정하면 변화 없이 계속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계정과목을 설정하는 초기 연도에 세심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부기의 작성으로 법인경영분석을 하는 경우에 계정과목이 변화되면 과거 연도와의 비교분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1-6) 원장

■ 원장의 의미

- 농업인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직접 원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원장을 작성하며, 여러분은 작성된 원장을 여러분의 목적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원장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원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 원장이란 계정과목을 한 곳에 모아 놓은 장부를 의미하며 예를 들면 시설채소 농가는 농약을 1회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 차례 구입할 것이며, 농약비 지출에 관련한 모든 내용을 한 곳에 모아 놓으면 농약비의 지출 내역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농약비 원장이라고 합니다.
- 이와 같이 농약비 원장 뿐만 아니라 모든 계정과목에 대하여 원장을 작성 하면, 모든 계정과목별 원장을 한 곳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 결산

■ 결산의 의의

- 농업인이 시설채소 법인을 경영한다면, 시설채소에 대한 수확이 완료되고 재배기간이 끝나면 경영성과를 파악하여야 함. 또한 축산농가라면 어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영성과를 파악하고자 할 것임. 즉, 농업경영체는 일정 회계기간을 마치면 법인 경영과 관련한 장부를 마감.정리하여 법인 경영의 재무상태(재산의 변동상태)와 법인의 경영성과를 알아보는 절차를 밟는데 이를 결산이라 합니다.
- 최근에는 농업부문에다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 손쉽게 법인의 경영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결산의 절차

- 결산의 절차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활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 결산의 절차는 결산의 예비절차로서 먼저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시산표는 합계시산 표와 잔액시산표가 있으며,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를 합친 것을 합계잔액시산표라 합니다.
- 합계시산표는 원장 계정의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합계해서 작성하는 표이며, 잔액 시산표는 각각의 계정의 차변에 차변 잔액을, 대변에 대변 잔액을 모아서 작성한 표이며, 합계잔액시산표는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로 하나의 표에 모아서 작성한 표입니다.
- 결산의 본 절차는 먼저 원장 및 각 계정의 오류를 수정하여 원장을 마감하는데, 우선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며, 다음으로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며, 그리고 분개장을 마감하며, 각종 보조장부를 마감합니다.

■ 결산보고서 작성(재무제표)

- 결산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함. 일반적으로 주요결산보고서는 법인경영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손익계산서」와 경영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재무상태표」입니다. 이들 결산보고서는 법인의 경영분석 혹은 경영진단을 위한 주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그리고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손익계산서는 법인의 경영에서 일정기간의 총수익과 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소비한 총비용을 대응하여 표시한 계산서입니다. 회계기간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가 순이익이며, 손익계산서는 경영분석 혹은 경영진단에서 판매분석, 비용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비용분석에서 얻은 자료는 경영비의 절감을 위한 경영 계획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는 어느 일정시점(회계연도말)에 있어서 농업경영체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해주는 표로써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한 표에 나타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경영목표가 순이익의 최대화하는데 있지만, 법인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산의 증가를 도모하여 부를 축적하는데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는 재산의 변동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하고 있으므로, 재무상태표를 연도별로 비교하면 연년의 재산의 변동상태를 비교분석할 수 있으며, 경영체의 안정성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이상에서 결산의 이론적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며, 최근에는 법인에도 컴퓨터의 보급이 일반화되어 손으로 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정리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컴퓨터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법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별첨 3. 온라인 농가경영장부 사용법을 참고하세요.

함께 생각해 보세요!

사 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여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법상 회사와 달리, 출자금 이외에도 영농조합의 전체 부채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무한책임이 맞나요?

답 변



과거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은 조합의 부채에 대하여 무한책임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5.1.6개정, 15.7.7시행)으로 현재는 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상기의 개정 규정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일 이후인 '15.7.7. 이후 발생한 채무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 례



영농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빙을 못 갖추면 회계적으로 비용처리를 못하게 되나요?

답 변



법인세법상 접대비 외의 지출증빙은 3만원까지, 접대비의 경우 1만원까지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이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또는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질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은 되나 조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정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쓰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손금불산입).

 함께 생각해 봐요!

사 례



영농조합에게 보조사업을 준다고 해서
지원요건을 상세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보면
공통지원요건 중

‘설립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1) 설립은 1년 이상이 되었고 운영실적이
1년미만인 자료가 인정이 되나요?
- 2) 운영실적 1년이상인 자료로 영농조합법인 이전
작목반 자료를 포함시키면 가능한지요?



함께 생각해 봐요!

답변



우리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 제91조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규정에 의해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을 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통 지원요건으로,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서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규정한 것은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실행 준비기간, 실제 운영 능력이나 경험 축적, 발전 가능성, 구성원들의 사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설립후 운영실적 1년이상 확인 여부는 동 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에서 최종 판단 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동 법인 설립 전의 작목반 실적은 동 법인의 실적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사 례



영농조합법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년 전 저온창고 설치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았고, 10년 전에는 집하장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자금 지원 후 15년이 경과해야 매각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자금 지원을 받은 법인 소유의 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매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변



보조금의 사후관리기간은 농기계종류는 5년, 시설물종류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저온창고는 매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집하장 설치 자금을 10년 전에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한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금 수령일자를 확인하신 뒤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보조금지원 받은 부서에 재차 확인을 하신 후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약 사후관리기간일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받은 부서 즉, 시군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시군청, 도비는 도청, 국비는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감가상각으로 90%를 제하고 나머지 10% 부분에 대해 보조율 만큼의 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사 례



영농조합법인을 탈퇴하고 지분에 대한 정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 변



영농조합원 지위를 탈퇴하려면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 방법으로 탈퇴하게 되며, 탈퇴한 후 조합원의 지위에서 가지고 있던 지분에 대하여 정산하는 방법 또한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을 자세히 살펴보고 조합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정관에 조합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제716조의 임의탈퇴 규정 및 제719조의 지분의 계산 규정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규정들에 의하면 조합원 지위를 임의로 탈퇴할 수는 있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민법 제716 조). 그리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출자의 종류에 관계 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만일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2. 법인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사·노무



✓ 농업에 적용되는 별도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즉, 농업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법에서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규정을 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현장방문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둡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 18세 미만인 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할 수 없으며, 노사가 합의로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효가 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약 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 강제 저금의 금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위약 예정의 금지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체결은 금지됩니다.
 - 전차금 상계의 금지 :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금전을 대부하는 계약체결은 금지됩니다.
 - 강제 저금의 금지 :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존속조건으로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체결은 금지됩니다.

■ 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

1) 일반고용허가제 일반 외국인 근로자

■ 내국인 구인노력

-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여 구인노력(3~14일)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 사업장이어야 함)
-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를 알선하고, 사업주는 알선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서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주요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및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근로자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사본, 신원보증서 등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취업사증(E-9)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교육(2박3일)을 이수 받은 후 사업장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2) 특례 고용허가제(외국국적 동포)

- 내국인 구인노력
 - 외국국적 동포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도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와 같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인노력(3~7일)을 해야 합니다.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동포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고용지원센터에 특례 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범위 내에서 외국국적 동포(노동부에 구직등록한 자)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 사업주와 외국국적 동포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거나 자율 구직(구인)이 가능합니다.
 - ※ 단, 민간 알선기관의 유료 직업소개는 금지되며, 사업주는 노동부에 구직등록하여 구직등록 필증을 발급받은 동포 중에서만 고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주요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 및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개시 신고 및 취업신고
 - 사업주는 동포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 동포는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에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임금·최저임금

1) 임금 지급의 방법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 임금 전부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노동조합 회비 등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임금을 근로자명의로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수당 등은 예외로 합니다.

2) 최저임금의 준수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불가)
 - 최저임금액은 매년 달라지므로 해당 년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임금액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이 포함되고,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상여금, 숙박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 퇴직급여제도

-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사내에 적립하였다가 퇴직시점에 지급하는 제도이고,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실제 퇴직시점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퇴직금 제도

-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는 2010년까지만 유예됩니다.

2) 퇴직연금 제도

-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IRA)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외에 적립된 퇴직금을 사업주가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외에 적립된 퇴직금을 근로자가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용하므로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연금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퇴직금제도보다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부담금 납입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 직장을 옮겨도 계속 적립이 가능하고 기업이 도산해도 적립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사업주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선정한 후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 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마. 근로시간 휴게 · 휴일

1) 전체 근로자에 대한 적용 기준

-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 휴 게: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 휴 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단,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일정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4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30분, 8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 단,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유급휴일이 반드시 주말일 필요는 없으며, 유급휴일을 평일에 주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 단,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의해야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휴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의 50%를 가산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 휴일근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진 유급휴일에 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 ※ 단,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의 근로자와 같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기본임금만 받고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이란 근로를 시작한 시업시각부터 근로를 끝낸 종업시각까지의 총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으로 식사시간이나 낮잠을 자는 시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비록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11시간을 일한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도중에 참 먹는 시간(오전30분, 오후 30분)과 점심 먹는 시간(1시간), 낮잠자는 시간(1시간)이 있다면, 동 시간들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치 않아도 무방하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임금 산정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와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명확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농림 사업이 아닌 보통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농림 사업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특례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특례규정이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 계약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주기로 결정했다면 근로기준법의 특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표 3>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적용 주요 내용 비교

구분	농업	다른 업종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8시간, 1주 40시간만 근로 가능 ■ 1주에 12시간까지만 근로시간 연장 가능
휴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주 동안 소장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연소자의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미만자는 야간에 근로할 수 없음(노동부장관 인가 받으면 근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만 근로 가능 ■ 18세 미만 자는 야간 및 휴일 에 근로할 수 없음(노동부장관 인가 받으면 근로가능)
여성의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 및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임산부의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는 야간에 근로할 수 없음(노동부장관 인가 받으면 근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는 야간 및 휴일에 근로할 수 없음(노동부장관 인가 받으면 근로가능)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시간외 근로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시간 · 휴게 · 휴일 외의 노동 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바. 4대보험

1) 산재보험

- 농림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주 및 5명 이상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가입대상입니다.
 -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에 의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를 곱한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 ※ 농업 산재보험료율 : 2.7%(매년 고시에 따라 변동가능)
 - 산재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며, 미지급된 보험료에 대해 매달 12/1000를 가산금으로 부과합니다.
-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 스스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업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보상처리를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 ※ ‘최초요양신청서’에는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하지만,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재해 근로자(또는 유족)가 단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라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의 1/2을 징수합니다.

2) 고용보험

- 농림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주 및 4명 초과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1호)
-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됩니다.
- 근로자와 사업자는 각각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급여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보험급여는 사업주가 신청하고,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의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가산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매월 12/100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3) 건강보험

-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5조)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가입대상이며, 근로자가 건강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와 사업자는 각각 보수월액의 6.07%를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6.5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매년 변동가능)
-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미납입한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체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매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연체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최대 9%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체류자격, 국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사 례



농업분야의 근로계약 체결 시 다른 분야와 달리 유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답 변



농업분야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 최저임금, 연차유급휴가, 야간 근로가산임금, 퇴직금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에 대하여 유의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 1시간당 최저 임금 (그 해 기준) 만을 지급하여도 됩니다.

■ 농업과 다른 업종의 근로계약시 주요 차이점

구 분	농업	다른 업종
근로시간	■ 제한 없음	■ 1일 8시간, 1주 40시간
휴게	■ 제한 없음	■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일	■ 제한 없음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기타	■ 근로시간·휴게·휴일 외의 노동 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함	

사 례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 변



‘불법체류 근로자’라 함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없이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합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록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관련 국내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사 례



농번기에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30명을 한꺼번에 고용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직업소개소라고 해서 믿고 이용했는데, 막상 근로자들과 분쟁이 일어나니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답 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근로자를 소개받았다 하더라도 각각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했다면 서면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금의 지급도 직업소개소를 통하지 말고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즉,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 기준법상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 례



저 4대보험 안 들면 안될까요? 제가 지금 아버지 밑으로 신고 들어가서 여기서 4대보험 들면 안 내도 되는 보험료 내는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안 들면 회사도 좋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답 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상의 가입대상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보험(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답변



보험(연금) 미가입시 불이익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가입대상이었던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료 및 가산금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및 벌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최대 300만원 / 건강보험 - 최대 100만원
국민연금 -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체료 및 가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연체된 보험료의 12/1000을 매월 부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 연체된 보험료의 3%~9%를 연체료로 부과

- 근로자와 사업자는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4.5%를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국민연금법 제 4조 제 3항에 의해 직권가입조치 되거나 같은 법 제29조제1호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연체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매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연체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최대 9%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운영자가 꼭 알아야 할 법무 정보



- ✓ 농업법인은 설립보다 운영상에서 알아야 할 정보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무 관련 정보는 사전에 알아두면 불필요한 분쟁과 갈등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 영농조합법인

■ 조합의 재산은 합유*(민법 제704조)

- 공유는 공유자간 지분관계가 표시 되며, 지분 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지만, 합유는 합유자만 표시 되고, 지분의 표시가 없습니다. 합유관계의 지분은 합유자들 내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합유관계의 필요성은 조합의 설립목적에서 찾을 수 있는데, 민법 제703조는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1항),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제2항)' 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합이 상호출자와 공동사업이란 목적으로 구성되는 단체임을 감안할 때 상호출자한 재산은 공동사업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바, 조합재산을 공유관계로 설정하면 공유재산은 각자의 지분을 지분권자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가운데 일부가 자기 지분을 조합원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할 경우 조합의 목적사업을 성취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공유관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합유라는 개념을 도출해내게 된 것인데 합유에는 외부적인 지분의 표시가 없으므로 지분을 처분할 수 없으며 조합내부적인 지분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합유 : 합유란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공동소유관계(共同所有關係)이다 (민법 제271조 1항)

■ 조합원의 의결권

-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사단법인)에 따르면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제1항),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항). 전 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의결권도 평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법 제16조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조합에 관한 규정 중 조합원의 의결권은 평등하게 적용하고는 있으나 (‘조합원의 과반 수’라는 문구로 미루어 조합의 의결권은 평등하다고 해석됨)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이와 다르게 조합출자지분에 비례하게 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시한 영농조합법인 정관 제11조 제3항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와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예시하고 있으나 이어서 ‘조합원은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영농조합법인의 장점

- 공동출자로 인하여 개인보다 규모가 큰 영농을 운영할 수 있다.
- 조합원이 현물출자할 경우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 공동구입, 공동판매시설이용 등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거래처에 대한 이익단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진다.

■ 영농조합법인의 단점

- 사업이 약간이라도 불투명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연이어 탈퇴할 수 있다.
- 조합원 사이에 반목이 생길 경우 경영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 출자자산의 공정타당한 평가가 어려워 조합원 사이에 불만이 생길 수 있다.
- 탈퇴, 해산시 잔여재산의 공정타당한 평가가 어려워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준조합원에게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아 준조합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어렵다.

나.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의 필요성 대두
 -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유입하는 길을 열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
 - 농산품수입개방, 유통혁명에서 영세농이 고사될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농촌의 고령화와 젊은 농업인의 감소 문제를 법인에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 개인의 농업기술을 법인에서 발전시켜 특허화 할 필요성이 있다.
 - 농촌일손 부족 및 용역비용 상승을 법인의 고효율성으로 상쇄할 수 있다.
 - 농촌 가구의 핵가족화를 막아 농촌인구를 적절히 보전할 수 있다.
 - 농지, 임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농민의 임차농 전략을 막을 수 있다.
 - 기후, 환경의 변화에 따른 농산물수확 및 판매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재배품종 선택의 어려움과 과잉공급시 가격 폭락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 농산물 유통단계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가격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 농기계 구입과 유지 및 농기계 운영기술 습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 영세농가의 경영 위기를 법인의 대자본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
-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장점
 - 도시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다.
 - 투자자인 주주는 주식투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면서 투자한다.
 -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비례한 결의권을 가질 수 있다.
 - 주식을 발행하여 거대자본을 모아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 투자와 경영이 분리되어 전문경영인이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
 - 거대한 자본금으로 대내외적인 신용도가 상승된다.
 - 자유로운 주식양도로 주주의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하다.
 - 주주가 경영에 신경 쓰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
 - 각종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단점
 - 농업경영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경영 판단을 그르칠 염려가 있다.
 - 회사 경영 및 영농에 대한 애착이 적어 우수상품을 재배하기 곤란할 수 있다.
 - 기술력을 습득한 직원들이 이직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 회사가 직원들의 단순한 영농기술습득 장소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장점

- 소수의 공동기업이므로 회사에 대한 애착심이 있다.
- 출자좌수에 대한 유한책임이므로 개인의 위험이 감소된다.
- 주식회사에 비하여 영업비밀이 보호될 수 있다.

■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의 단점

- 유한책임사원들의 공동출자를 바탕으로 성립하므로 자본의 규모가 비교적 작아 대규모사업에는 부적합하고, 주식회사에 비하여 대외적 신용도가 낮다.

* 법인격 부인의 법리 및 판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 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우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2001. 1. 19. 97다 21604).

개인적 불법이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더라도 개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 례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다가 조합원 5명 중 2명이 탈퇴선언을 하고 출자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퇴조합원들에게 그들이 출자한 금액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지금 영농조합법인에는 재산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부채가 있는 상태입니다.

답 변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의 형태를 가지는 단체로서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조합원과 남은 조합원들 사이의 정산은 당초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탈퇴 당시에 조합의 재산상태를 평가하여 지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탈퇴 당시에 영농조합법인에 적극재산이 전혀 없이 소극 재산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탈퇴 조합원은 민법 제711조 규정에 의하여 오히려 소극재산을 부담하면서 탈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민법조항은 조합의 손익분배의 비율을 규정하면서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고,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사 례



부친이 농업법인을 설립하시고 2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이 영농조합법인을 승계 받으면서 구성원을 5명(가족)으로 변경했습니다. 창고부지는 대지 150평에 창고 60평, 2층 주택 및 관리사가 한 30평 정도 되는데 명의를 변경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냥 나뉘었는데, 그냥 뒤도 좋은지 아니면 처분 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사업 실적이 미미해 2005년에는 폐업신고를 하고 현재 법인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답 변



영농조합이 비록 폐업신고는 했지만, 조합이 해산,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등기를 하지 않는 한 조합은 여전히 그 실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재산을 계속 소유할지, 분배할지는 당해 조합원들이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합원들이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족들 사이에 조합의 운영, 존속 등에 관하여 이견이 없는 한 굳이 비용을 들여 개인소유로 명의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여 지는데, 조합원 개개인들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가 조합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조합원 개개인이 채무를 지고 있을 경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가 조합원의 조합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 례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했는데 임원임기에 관한 등기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답 변



법인에는 영리법인(상법상 법인)이나 비영리법인(민법상 법인 및 특별법상 법인) 등이 있으며 그 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임기가 만료된 후에 임기연장(중임등기) 또는 임원변경(새로이 선임된 경우)등기 등을 제때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등기 해태 과태료가 대표자 개인에게 부과됩니다.(민법 제97조)

보통, 주식회사의 경우 정기주주총회 시(결산기가 매년 12월인 경우 3월말까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총회 시 (정관으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름) 임원변경이 있으면 그때 그때 변경 등기를 행하고 있으나, 정관에 정한 임원의 임기를 살펴보고 그 임기가 만료되면 만료일로부터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함께 생각해 봐요!

사 례



저희 영농조합은 18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합장편 조합원들과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조합장편 조합원 15명이 결의하여 일방적으로 다른 조합원들 3명을 제명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에 대항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영농조합은 그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는데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그것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민법의 조합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의 제명관계를 살펴보면 민법 제718조에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단순한 감정의 골에 의하여 제명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 제명은 무효일 것입니다. 한편, 조합원에 대한 제명은 ‘다른 조합원의 일치’ 로써 결정한다고 하는 점으로 미루어 18명의 조합원들 중 1명을 제명할 경우 다른 17명의 일치가 있어야 하는데, 한 번에 3명의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는 제명 결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의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에 대하여 제명무효를 통보하고 이에 불응시 법원에 조합원제명결의 무효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법인 설립과 운영 시에 고려해야 할 점

- 어떤 형태의 농업경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 농업은 살아 있는 생물의 성장을 기본으로 하여 영위되는 사업이므로 농업인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식만큼 소득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농업으로 소득을 올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농업인의 최대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 나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경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 나는 경영자이고 타인의 노동력과 경험, 지식을 이용하는 농업경영을 기획하더라도 나 자신의 직접 경험이 없으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 수익은 어떻게 창출될 것인가?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경영 상태가 나빠져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 특히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투명하게 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 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법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 법인 설립에 앞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농업이 주로 생산에 의존하다 보니 다양한 유통경로의 확보와 판매를 위한 영업, 마케팅 스킬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전에 유통과 판매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인 운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하므로, 조직에서 필요한 대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대화는 구성원간의 오해와 갈등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